

17.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중 개정령(안) 입법예고

제정경제원공고 제1997-121호 1997. 12. 17

개 정 취 지

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 규제법이 제185회 정기국회에 서 심의·의결(1997. 11. 18)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을 위해 조세감면규제법시 행령개정안에서 위임한 부채상환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외화표시부채등의 환산방 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특별부가세 감면이 배제되는 비업무용부동산 범 위를 축소 조정하려는 것임.

주 요 내 용

- 가. 법인이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부 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양도금을 수 령하는 때에 부채상환에 사용할 목적임 을 표시하는 계정을 설정하도록 함.
- 나. 사후관리를 위한 기준부채비율 및 부 채비율을 계간함에 있어서 외화표시부채 등에 대하여는 기준부채비율은 재무구조 승인일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, 부채비율 은 사후관리 당해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평가하

되, 환율변동에 의해 불리한 경우가 발 생하지 않도록 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 재 보유하는 외화표시부채 등의 금액 범 위내에서는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의 환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.

- 다. 특별부가세감면이 배제되는 비업무용 부동산범위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를 준용하도록 하여 비업무용부동산 범 위를 축소하고 세법간 판정기준을 통일 함.

주택회보